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노후준비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시행 2024. 7. 10.) 됨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의 심의사항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2조제4항)
-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의2)
- 다. 법 제8조제2항의 심의 절차 및 운영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2조의3)
- 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사항) 법 제8조제1항에서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
3.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조정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의3(심의 절차 및 운영) 법 제8조제2항의 심의 절차 및 운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u>국가노후준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u>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 ----- ----- ----- <u>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사항)</u> 법 제8조제1항에서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u>기본계획</u>
	2. <u>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 준비지표</u>
	3. <u>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조정</u>
	4. <u>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후 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u>

<신 설>

제3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지명한다.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부

5. 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의3(심의 절차 및 운영) 법 제8조제2항의 심의 절차 및 운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삭 제>

5. 고용노동부

6. 여성가족부

7. 금융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

<삭 제>

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

관은 법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삭 제>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2 - 3369